

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			처리기간
			15일
법인명(또는 상호)	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대표자 성명		생 년 월 일	
전 화 번 호		팩 스 번 호	
주 소			
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범위			
「저작권법」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 단체로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하			
※ 첨부서류 1.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.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		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